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69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 오기형 · 허성무 · 박지원

김남근 · 김문수 · 박홍근

주철현 • 박지혜 • 복기왕

박해철・김 윤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56조는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대규모 세수결손이 발생하고, 정부가 더 이상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는 당연히 세입·세출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에 대하여국회의 심의·확정을 거쳐야 할 것임.

그런데 2023회계연도 56.4조 원, 2024회계연도 30.8조 원이라는 유례 없는 세수결손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국채발행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없이, 국회와 아무런 협의도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임의의 사업을 불용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였음.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세수부족을 핑계로 「국가재정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위반하고, 과거 결산 당시 국회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음.

2008년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의 통합으로 기획재정부가 출범한이래, 하나의 부처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그리고 위와 같은 재정운영도 결국 기획재정부라는 하나의부처 안에 예산기능과 국고기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 경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등).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19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과"를 "재정경제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한다.

제2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2조의2(기획예산처) ①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기획 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제27조의 제목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은"을 "재정경제부장관은"으로,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화폐"를 "화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재정부에"를 "재정경제부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5항·제7항

및 제9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조직 명칭 변경 및 신설에 따른 소관사무 및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각각 승계한다.
 - ② 이 법 시행당시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은 기획예산처 또는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국무회의) ① (생 략)	제12조(국무회의) ① (현행과 같
	음)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	2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	
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	
우에는 <u>기획재정부장관이</u> 겸임	<u>재정경제부장관이</u>
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	
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부총리) ① • ② (생	제19조(부총리) ① · ② (현행과
략)	같음)
③ 부총리는 <u>기획재정부장관과</u>	③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겸임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제정책	④ <u>재정경제부장관은</u>
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	
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	
• 조정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국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u>기획재정</u> 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 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 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 이 없는 경우에는 제26조제1항 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26조(행정각부) ① 대통령의 통 할하에 다음의 행정각부를 둔 다.

- 1. 기획재정부
- 2. ~ 19. (생략)
- ② 행정각부에 장관 1명과 차

<u> </u>
<u> 장관이</u>
제22조의2(기획예산처) ① 예산ㆍ
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
산처를 둔다.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
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
직으로 한다.
제26조(행정각부) ①
<u>1. 재정경제부</u>
2. ~ 19. (현행과 같음)
②

-----재정경제부

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 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 으로 한다. 다만, <u>기획재정부</u>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산업통상자원 부 · 보건복지부 · 국토교통부에 는 차관 2명을 둔다.

③ (생략)

- 제27조(기획재정부) ① 기획재정부 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화폐·외환·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국제금융,공공기관 관리,경제협력·국유재산·민간투자 및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② <u>기획재정부에</u>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부장관</u>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 ④ (생 략)
 - ⑤ 관세의 부과 · 감면 및 징수

<u>재정경제부</u>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 <u>(재정경제부)</u> ① <u>재정경제</u>
<u>부장관은</u>
<u></u> के जो
② <u>재정경제부에</u>
3
<u>재정경제부장관</u>
 (A (처레기 가야)
④ (현행과 같음) ⑤

와	수	출입물	품 9]]	통관	및	밀수	-
출(입단	속에	관형	한	사무	를	관징	Ļ
하기	7]	위하여	겨	<u>フ</u>] .	획재	정부	장관	<u>-</u>
소	속으	.로 관	·세충	당을	둔대	7.		

- ⑥ (생략)
-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 ⑧ (생 략)
- ⑨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
 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
 를 관장하기 위하여 <u>기획재정</u>
 부장관 소속으로 통계청을 둔다.
- ① (생략)

<u>재정경제부장관</u>
··
⑥ (현행과 같음)
7
장관
⑧ (현행과 같음)
9
재정경제부
<u>장관</u>
① (혀했과 같음)